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
 편집인 : 기획홍보과장
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
 전 화 : 490-3315~9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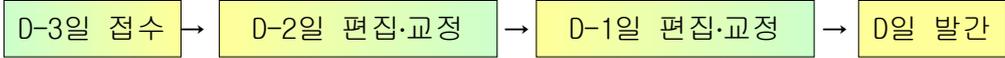
제1613호 2010. 1. 28.

공 고

제2010-63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

※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.

- ➡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: 490-3317 / FAX: 490-3640
- ➡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,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
- ➡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-3일 18:00 까지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



- 🔴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,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🔴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 람											



공 고

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0-63호

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0년 1월 28일

중랑구청장

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이 「도로명주소법」(2009. 4. 1. 공포, 2009. 7. 2. 시행)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「서울특별시중랑구새주소위원회」를 「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명주소위원회」로 하는 등 도로명주소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신설(안 제8조)

- 재교부 수수료는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함.
- 재교부 수수료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함.

나. **도로명주소시설물 설치 원인자 부담 비용 규정 신설**(안 제8조의2)

-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중랑구재무회계규칙 세입·세출외 현금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함.

다. **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**(안 제19조)

- 도로명주소안내판 :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을 광고하지 않는 건물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함.
- 도로명주소안내도 :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할 수 있음.

라. **서울특별시중랑구 새주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위원회로함**(안 제24조)

3. 의견제출

본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(참조 : 지적과장,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길 175 우 131-701, 전화 : 490-3838, FAX : 490-3637. E-mail: meykim@jn.go.kr)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지적과(☎ 490-3838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